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채 인 목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시장이 개인,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.

- 또한 제출받은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, 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시장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2제1항).

나. 제출받은 자료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2제2항).

다.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2제3항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